

2019. 6. 26. 보도 자료

공보관실 02)708-3411 / 팩스 02)766-7757



제 목 : 6월 심판사건 선고 안내

○ 사건번호 및 사건명 : 붙임 참조

○ 내 용 :

위 사건에 대한 선고 기일이 다음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알려 드리오니
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- 일 시 : 2019. 6. 28.(금) 14:00 ~

- 장 소 : 헌법재판소 대심판정

붙임 선고목록 1부. 끝.

선 고 목 록

[일시·장소 : 2019. 6. 28.(금) 14:00, 대심판정]

□ 선고시간 - 14:00

1. 헌법소원심판사건(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)

연번	사건번호 및 사건명	비고
1	2017헌바135 구 도시철도법 제34조 제2항 위헌소원	
2	2017헌바214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2호 전단 위헌소원	
3	2018헌바128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 위헌소원	
4	2018헌바18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등 위헌소원	
5	2018헌바400 총포·도검·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 등 위헌소원	

2. 헌법소원심판사건(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)

연번	사건번호 및 사건명	비고
6	2017헌마45 교도소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등	
7	2017헌마1309 치과의사전문회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 등 위헌확인	
8	2018헌마1093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	